

	<h2 style="margin: 0;">시간강사위촉규정</h2>	규정번호	3-3-10
		제정일자	2001.09.01.
		개정일자	2017.05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시간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2.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: 해당분야 산업체경력 또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
3. 재위촉의 경우, 직전학기 별지2 시간강사 강의총실도평가표 ①의 평가점수가 36점 이상이며, ②의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자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1. 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2. 외국어 과목과 관련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할 경우

제3조(위촉 및 절차) ① 시간강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교수(전임강사 이상)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.

1. 추천서 1부
2. 최종 학위 증명서 1부
3. 경력(재직) 증명서 1부
4. 시간강사 위촉 자격 평가표[별지1] 1부

②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었던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학력이나 학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 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간강사 위촉기간은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.

④ 시간강사 위촉을 받은 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.

⑤ 시간강사에 대하여는 대학의 필요에 따라 강의평가를 할 수 있다.

제4조(해촉)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장은 해촉할 수 있다.

1.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이 미달되어 시간강사의 교과목을 담당하여야 할 경우
2. 시간강사가 담당할 강좌가 합강 또는 폐강된 경우
3. 시간강사가 학기 중이라도 정상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4.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

제5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